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 계 · 시정 요구

제 목 ○○○ 주상복합아파트 교통영향평가(다수인민원) 처리 부당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징 계 대 상 자 울산광역시 ○구 ○○○○과 지방○○○○보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① 울산광역시 ○구 ○○○○과 지방○○○○ ○○○
(전 ○○○○과)

② 울산광역시 ○구 ○○○○과 지방○○○○ ○○○

내 용

지방○○○○보 ○○○은 2017. 1. 1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구 ○○○○과에서 ○○○ 주상복합아파트 교통영향평가(다수인관련민원) 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 ○○○는 2015. 1. 12.부터 2018. 1. 11.까지 ○구 ○○○○과에서 동건 실무담당으로 근무하였고, 지방○○○○ ○○○은 2014. 8. 2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구 ○○○○과에서 ○○○ 주상복합아파트 교통영향평가(다수인관련민원) 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

로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민원심사관(민원실장 등)은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의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지 및 관리자는 해당 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구(○○○○과)에서는 ○구 ○동 000-0번지 일원에 ○○○○○ 주상복합아파트(64,968.8㎡/공동주택 298세대, 오피스텔 119실/ 지하6층 지상32층)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2017. 5. 19. 준공 처리하였다.

그런데 동 입주자대표 등 297명이 입·출입구가 ○○로(대로)로 진출입하게 되어 있는데 사고위험이 초래되고 있어 입주민들 간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

다며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거나 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2017. 12. 12. ○구 ○○○○과에 다수인관련민원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동 다수인관련민원을 접수한 ○구 ○○○○과에서는 담당부서를 ○○○○과로 지정 통보하였으나, 2017. 12. 14. 접수 취소하여 ○○○○과로 이송되었다.

그리하여 그 당시 ○○○○과 담당자가 시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구(○○○○과)에서는 울산광역시 ○○○○과로 2017. 12. 14. 이송 조치하였고, 울산광역시 ○○○○과에서는 동일 날 접수하여 울산광역시 ○○○○과로 전달하였으나, 2017. 12. 18. 담당자(○○○ 계약직)가 검토결과 ○구 소관 업무라고 판단하여 다시금 ○구(○○○○과)로 2017. 12. 19. 재 이송 조치를 하였다.

○구(○○○○과)에서는 2017. 12. 19. 재 접수 즉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과의 요청에 의하여 동 민원을 ○○○○과, ○○○○과 등과 2017. 12. 19. ○○○○국장 주재 하에 회의를 개최한 후 ○○○○과로 부서를 지정하였으며, ○○○○과에서는 동 내용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2017. 12. 21. 보고하였다.

동 보고서 검토내용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는 울산광역시 ○○○○과 소관 업무이며,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에 따라 금회 집단민원 요구 내용은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으로써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과로 변경심의 접수 안내 답변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후 2017. 12. 12. 입주자대표회의장 앞으로 동 내용을 회신 조치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과 소관 부서인 울산광역시 ○○○○과로 문의”하라고 ○○○○국장이 결재하여 회신하였다.

또한 ○구(○○○○과)에서는 동 다수인관련 민원조사 분석카드를 2017.

12. 22. 작성하면서 집단민원요지 및 발생동기 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 기재하면서 “판단불가,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는 울산광역시 ○○○○과 소관”이라고 일괄 정리하였으며, 동 민원처리 결과를 매월보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과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인관련민원 대장에 최종처리 여부 등이 기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금번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소관부서 검토결과 ○구 ○○○○과 소관이 명확하게 규명되었으며, 민원(진출·입구 변경) 검토를 위하여 2018. 3. 12.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동 교통개선변경 요구 건은 울산광역시 ○○○○위원회 진달이 불필요하며, 진정민원인들이 개선 요구하는 사항에 따르면 동측 진출구는 소로(8.0m)로서 좌회전 진출가능 여부와 서측 진입구는 소로(10.0m)로서 좌회전 진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판단으로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동 민원을 처리하면서 울산광역시 소관 업무라고 잘못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민원 답변을 한 ○구 ○○○○과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인 대표에게 정정 답변을 하여 미 검토된 입·출입구 개선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동 다수인민원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관 업무 미루기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구청장보고 및 민원대표 회신 등으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다수인관련민원 대장작성 미 조치 등 관련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감사일 현재까지 동 민원요구 사항이 검토 없이 중단·방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 관서에서는 다수인관련민원을 처리하면서 부서 간의 미루기로 업무를 일관하다가 ○구 ○○○○과 실무담당자(○○○)가 “국장의 지시라며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을 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부당하게 회신 조치” 하였으며, 특히 울산광역시 소관 업무(○구 ○○○○과 소관 업무임)라고 내부보고(구청장 결재) 하였다면 반드시 울산광역시에 문서로 통보하거나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 중 지방○○○○보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구청장은

[징계] 위 관련자 중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와 ○○○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민원과 유사한 다수인관련민원 처리 시에는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업무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회신토록 주의를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 민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당한 회신에 대하여 주민대표 등에게 안내 조치하고, 차량 출·입로 동선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대책이 강구되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